

UR農産物 協商과 食品産業의 對應方案

윤 석 인 / 韓國食品研究所

I. 序 言

우리 經濟는 1970年 이후 年平均 8%라는 놀라운 成長을 지속하여 對內的으로 1인당 國民所得이 5,000弗에 육박하였고 對外的으로는 總 貿易規模가 年間 약 1,200億弗에 달하여 世界 12번째 交易國으로 부상하였다.

그동안 食品産業은 製造業中 內需産業으로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며 몇몇 産業체를 제외하고는 零細性を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食品産業의 특수성인 原料의 制限性과 國內 賦存資源의 不足은 原料의 外國 輸入 依存度의 심화를 불러오면서 食品産業의 發展을 둔화시켰다. 이러한 狀況에서 美國의 압력으로 작년에 발표된 “農林畜産物 輸入自由化 3개년 豫示計劃”을 보면 1991년에 가서는 食品全般에 걸친 輸入開放이 85%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雪上加霜으로 금년말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農産物(加工, 半加工品 包含)協商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國民經濟와 國民保健

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食品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農家經濟와 連繫시켜 長·短期 對策을 樹立하여야 하겠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農産物 協商內容을 보면 食品의 原料 뿐만아니라 加工 및 半加工品의 全面的 開放을 예고 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 발전은 國內的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1988년 아이엠 에프 8條國 가입, 가트 11條國 이행으로 최소한 國際協商場에서는 開途國의 立場을 떠나 先進國 立場에 서게 되었다. 더군다나 작년 10월 가트의 國際收支條項 졸업 결정으로 1997년까지는 食品 市場이 어떤 형태로든 開放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食品産業 분야에서 본다면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 많은 原料를 값싸게 供給받아 消費者에게 값이 저렴한 良質의 食品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食品加工 기술을 活用하여 國際競爭力을 강화시켜 食品輸出 基盤을 造成할 수 있다는 肯定的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88年 食品輸入 開放에 따른 國際競爭力 可能性을 調査한 바에 의하면 原料부문을 輸入에 依存하는 品目뿐만 아니라 우리 傳統食品인 된장, 고추장까지도 價格 競爭

力이 低位할 뿐 아니라 品質, 포장 등 非價格 競爭力 면에서도 열세에 놓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시 가장 競爭力이 있는 品目으로 예측되었던 것은 드롭프스, 초코렛, 추잉껌, 캐라멜등으로 調査되었으며 이들 品目은 價格, 品質 뿐만 아니라 消費者 選好度에 있어서까지 優位를 점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88년과 1989년 드롭프스와 초코렛의 輸入實績을 검토해 보면 드롭프스의 경우 “88”년에 이백칠십칠만삼천불이 수입되었으나 “89”년에는 천백칠십삼만구천불이 輸入되어 “88”년 對比 약 4배이상 증가되었으며 초코렛의 경우 칠백이십만칠천불이 수입되던 것이 “89”년에는 천구백구십구만천불이 輸入되어 “88”년 對比 약 2.5배가 증가되었다.

한편 근자의 우리生活은 所得增大와 더불어 家族內的 存在였던 주부들이 家族外的 存在로 자리 바꿈을 하면서 加工食品의 消費가 急増하고 있으며 選好 역시 高級化되고 편의주의로 西歐化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 食品產業界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急増하는 原料부문의 農產物 輸入 뿐만 아니라 完製品 또는 半加工 상태의 加工食品 輸入이 急増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國民保健과 더불어 農業基盤을 支持하고 있는 食品產業界의 基盤을 完全히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우루과이라운드

1. 우루과이라운드(UR)協商的 概要

가. 意 義

○'86. 9 南美의 우루과이 Punta del Este 에서 GATT會員國 閣僚들이 모여 世界

交易擴大方案을 協議하기 위해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을 개시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出帆한 GATT의 8번째 多者間 貿易協商으로서 多者間 貿易體制 強化를 위한 世界貿易改善을 위함.

※ 가트(GATT)

GATT(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구미제국등 23개국 이 參與하여 設立된뒤 1948년부터 活動해 왔으며 현재 正회원국이 96개국, 잠정가입국이 26개국 등 총 12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4일 가입하였다.

GATT는 世界貿易에 基本질서를 부여해 주는 하나의 協約으로 自由·無差別·多者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나. UR擡頭 背景

○'80년대에 들어 保護貿易主義 傾向의 擴散으로 非關稅 障壁의 濫用事例가 증가되고 국가간 通商摩擦이 深化됨에 따라 이를 GATT體制안으로 끌어들여 多者間 協議를 통해 해결할 必要性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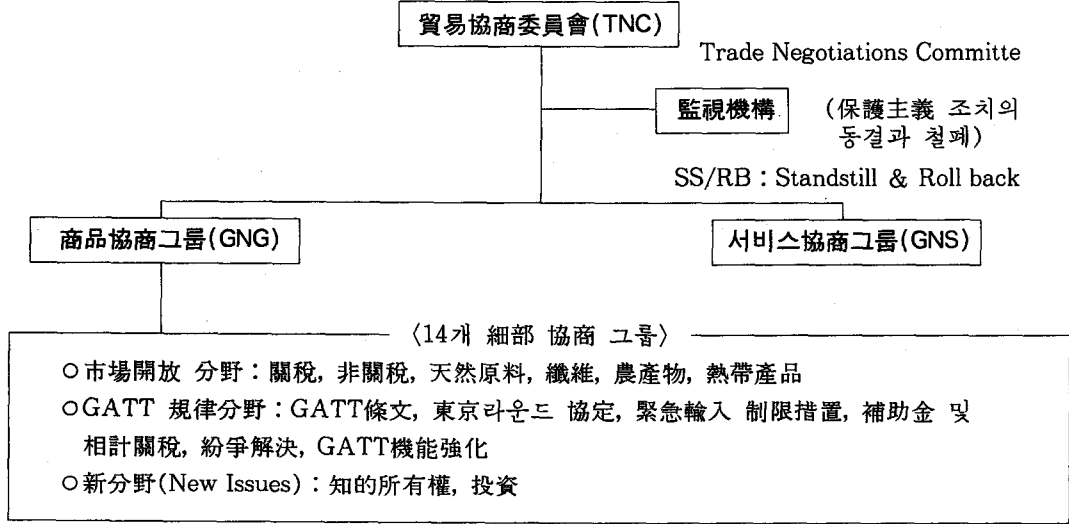
○科學技術의 발달로 高度技術商品의 交易가 增加하고 그동안 GATT에서 다루지 않던 金融, 運送, 通信 등 서비스 交易도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多者間 規範을 定立할 必要性 대두됨.

○國際收支赤字, 通商摩擦 등 문제를 새로운 多者間 貿易協商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미국, 일본 등 주요 先進國의 理解關係 일치함.

다. UR의 目標

- 關稅引下 및 非關稅障壁 緩和
- GATT規律 強化
- New Issues에 대한 規範 마련

라. 協商體系



마. 協商期間

協商基間은 '90. 12. 3-7, Brussels 閣僚會議에서 終決될 豫定이다.

표 1

UR/熱帶產品協商的 對象品目

品目群	品目群名	主 要 品 目
1	熱帶飲料	· 커피 및 커피조제품, 코코아 및 코코아조제품, 차류
2	양념류, 질화 및 기타 植物性 生産品	· 후추, 고추, 계피, 정향, 육두구, 생강, 샤프란, 카레이, 정유, 질화, 삼수, 접수, 한약재, 식물성 액즙, 대나무, 등나무, 염색용 원료, 등 세공품
3	油脂物	· 낙화생, 코프라, 팜유, 야자유, 팜핵유, 식물성유
4	담배, 쌀, 熱帶植物의 뿌리	· 잎담배, 제조담배, 벼, 정미, 현미, 쌀가루(찹, 펠리트, 전분)
5	熱帶 果實類	· 바나나, 코코넛, 브라질넛, 파인애플, 에보카도, 과아버, 망고, 포포우, 열대과실 조제품
6	熱帶木材 및 고무	· 원목, 제재목, 목재세공품, 가구, 천연고무, 고무제품(고무판, 타이어, 튜브, 고무사, 고무끈 등)
7	황마 및 輕纖維	· 황마, 사이장마, 기타 식물성 섬유 및 제품 등 ※263개품목

※ 協議內容

- 非加工產品(Unprocessed Product)에 대한 關稅撤廢
- 半加工(Semi-Processed), 加工(Processed)產品에 대한 관세의 철폐 혹은 인하
- 熱帶產品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非關稅措置(Non-Tariff measures)철폐

2. 協商推進 狀況 및 展望

가. 先進國은 자국의 관심분야 타결에 協商力을 集中시키면서도 開發途上國의 관심분야에는 다소 소홀하여 협상의 이익이 參

加國間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서비스, 知的所有權, 投資等 선진국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開發途上國의 消極的인 反應속에 先進國을 中心으로 協商進行中

- 農産物分野 協商에 있어서는 미국·호주 등 수출국과 EC·일본 등 輸入國間 補助金 減縮水準과 方法에 對하여 尖銳하게 對立되고 있음.
- 수출국들은 일부 선진국이 남용하고 있는 緊急輸入制限이나 덤핑에 대한 과도한 制限措置의 改善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이에 소극적임.
- 나.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R 協商의 期間內 妥結을 위한 努力이 활발하게 進展되고 있어 어떤 形態로든 協商妥結 豫想
- 農産物, 纖維, 知的所有權, 서비스等 主要 그룹의 현상은 협상 최종단계까지 계속 爭點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나 協商主導인 미국과 EC간에 異見이 대부분 解消됨에 따라 협상진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協商실패시 世界貿易環境 惡化에 대한 회원국의 共同인식 擴散 우려
- 미국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各國에 대한 通商壓力을 再開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自由貿易地帶의 設치를 推進할 展望.

3.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

가. UR農産物(加工 및 半加工品)協商의 推進 背景

- ※ 農産物 協商은 食品協商과 같은 位上에서 보아야함.
- 農産物協商의 추진배경으로는 국제농산물 需給構造의 變化와 美·EC등 先進國 農業政策의 限界 等 2가지로 把握될 수 있음.
- 1) 國際交易環境 變化

- (1930-1970年)(農業의 安定的 成長)
 - 農産物輸入國—農業投資의 擴大로 自給 達成에 注力
 - 農産物輸出國—農産物輸出擴大를 爲하

- 여 投資增大
- (1980年代)(세계경제 침체로 保護主義 傾向 擡頭)
 - 農産物輸入國—國際産業保護를 위한 管理貿易 擡頭
 - 農産物輸出國—輸出減少와 過剩生産으로 在庫 增加
 - 低開發途上國—慢性的인 食糧不足
- 2) 美·EC·日本 等 先進國의 農業政策 限界
 - 農業支援과 輸出補助金 支給에 따른 財政負擔 增加
 - 소비자 剩餘減少, 資源의 非效率的인 配分 等 社會的, 經濟的 費用 增大
 - 農産物, 貿易紛爭 擴散(美·日間 貿易紛爭, 美·EC간 補助金 紛爭 等)

나. 우리의 協商與件

- 農水産物 輸入國으로서의 위치, 經濟發展 水準을 고려할 때, 우리의 協商力은 매우 허약함.
 - 國家 전체적으로 GATT의 交易自由化를 支持해야 할 立場이나, 農産物分野만은 國內農業保護를 위한 最大限 例外를 認定받아야 할 긴박한 狀況임.
 - UR 農産物協商은 미국·EC등 輸出 強大國 主導로 推進됨으로서 輸入國 農業에 대한 例外的 保護措置를 認定 않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음.
 - 우리나라 經濟發展水準은 國際여건으로 '90년대초 先進國 進入이 豫想되고 있어 여타 開途國과 共同補助를 취하는데 限界가 있음.
- 農産物交易 自由化 趨勢에도 不拘하고 必須農産物의 保護根據를 確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음.
 - '89. 10 GATT/BOP 卒業決定과 관련, 殘存輸入制限 品目(488개)도 '97까지 農林畜水産物輸入 自由化 또는

GATT 規範에 一致시켜야 하는 義務負擔이 있음.

—UR에서 農產物 交易의 대폭적 自由化가 合議될 경우 必須 農產物의 保護 根據 喪失 憂慮됨.

※UR, 農產物 協商이 이루어 진다해도 미국, 캐나다, 호주등 국가와의 쌍무간 貿易協商은 계속되는 것임.

다. 主要協商議題

1) 協商目標

- 長期的으로는 公正하고 市場指向의인 農業貿易體系의 確立
- 이의 실천방법으로 自由貿易原則에 입각한 새로운 GATT 規範의 制定과 農業保護 및 支持水準의 相當한 減縮方案 講究

2) 主要協商 議題

(1) 國境保護(Border Measure)

- 現行 農產物 關稅引下 및 讓許擴大
- 모든 數量制限 等 非關稅措置를 關稅로 轉換

(2) 國內補助(Internal Support)

- 農產物交易에 影響을 주는 모든 形態의 補助金 減縮

(3) 輸出競爭(Export Competition)

- 輸出補助金の 減縮 또는 撤廢

(4) 食品衛生 및 動·植物檢疫(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

- 관련 國際基準에 合致運營함으로써 貿易規制 效果의 最小化

※衛生 및 植物衛生 規制

- 1) 衛生 및 植物衛生規制에 관한 協商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國際食品規格委員會), 국제수역사무국(國際獸疫事務局), 국제식물보호협약(國際植物保護協約) 등 相關 국제기구의 基準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現행 20조 b의 人間 및 動·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보호를 위한 收入規制의 必要性은 유지되어야 한다.

2) 가트에서 相關 국제기구 基準을 수용함에 있어 參加國은 各國의 食습관에 차이가 있고, 環境的 여건이 다른 반면, 병충해 발명 및 전파에 대한 방제기술 차이와 실험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輸出品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배제되어야 하고, 開發途上國의 합의사항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技術水準의 發展程度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양자간 또는 다자간 분쟁해결은 貿易을 規制한다는 效果의 측면보다도 위생 및 植物衛生 規制가 유지되어야 할 必要性이 우선적으로 檢討되어야 하며, 相關 國際機構 專門家의 活用은 地域別 專門家가 參與되도록 하여야 한다.

(5) 食糧安保 等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Non-Trade Concerns)

(6) 開發國 優待(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라. 協商의 展望과 우리 農業에 미치는 影響

가) UR農產物 協商 展望

○農產物交易의 完全自由化와 農業에 對한 政府支援 措置의 減縮

—대다수 輸入自由化 品目은 關稅化 對象

—농업의 非交易的 要素(NTC)가 유 일한 輸入制限 根據가 될 것으로 展望

나) 우리 農業에 미치는 影響

○기존 國內農業 支援政策의 減少 불가피

- 一價格安定帶 및 收買備蓄制, 長·短期 低利 營農資金 支援, 差額補償, 일부 農業構造改善對策 等
- 輸入制限品目的 自由化 및 關稅轉換 不可避
- 一모든 農產物의 輸入自由화와 동시에 關稅相當額 賦課
- 一그러나, 關稅相當額은 계속 減縮됨으로서 競爭力이 脆弱한 國內農產物生産基盤에 심각한 打擊 豫想
- 一특히, 현재 輸入이 거의 없는 品目도 一定量의 輸入 許容 不可避
- 輸出有望品目에 대한 補助金 支援이 困難
- ※國民食糧의 安定供給과 農家所得의 確保를 위한 農業政策의 全面 再檢討가 不可避하다.
-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品目으로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9個品目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國別現況資料(Country List)로는 輸入規制對象 品目 488個 全品目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음.

Ⅲ. 食品産業의 現況과 問題點

1. 食品産業의 機能

- 食品産業은 農水畜產物의 生産과 여기에 서 얻어지는 生産物에 生化學的 產物을 素材로 하여 食品을 生産함으로써 國民健康과 國家經濟에 다양한 機能을 갖는 産業으로
- 安全하고 衛生的인 食品을 開發, 供給함으로써 國民健康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함.
 - 原料의 附加價値를 提高시키고 利用度를 높혀 消費者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經濟活動 時間을 연장시킨다.
 - 食品産業은 農產物의 安定的 生産과 價格

을 유지하고 食糧需給에 安定을 도모함.

- 製造, 流通, 저장 및 포장등 食品 관련산업의 고용 部門을 創出하여 실업자 問題를 해결한다.

2. 우리 食品産業의 現況

가. 食品産業의 成長

食品産業은 食品原料의 生産의 측면과 原料를 製造加工하는 두가지로 대별.

- 우리 食品産業은 國家經濟構造로 보아 1984年 “輸入自由化豫示制度”이후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도 1989년에는 GNP의 構成比는 약 10%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食品産業全般(農產物生産포함)의 成長은 1987年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食品製造業 部門을 볼때 1983년까지는 全體製造業의 1.5배에 도달하는 年平均 17%의 높은 成長率을 유지하였으나 1984年 이후는 全體製造業成長率의 1/2에 불과한 약 6%의 成長率을 보였으며 1989년에는 약 3%의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단적으로 보아 食品輸入開放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 우리 食品産業이 갖고있는 問題點

- 食品産業은 지금까지 內需産業이며 消費財 生産業으로 잘못 인식 되어왔다.
- 食品原料의 外國依存度가 깊어 稼動率이 떨어지고 生産性 向上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 食品製造業體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規模가 零細하여 技術水準이 낙후되어 있다.
- 國內市場이 大都市에 편중되어있고 수입 식품선호도가 높아 傳統食品開發이 늦어지고 있다.
- 食品産業과 깊은 關係를 갖는 食品의 기계, 포장, 저장등의 技術개발과 投資가 늦어지고 있다.

IV. 食品輸入開放 現況과 展望

가. 食品輸入開放 現況

우리는 1966년까지 産業 및 食品産業 분야의 보호를 위해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輸入許可制(Positive List System)를 통한 수입억제책을 실시하였으나

○1967년 4월 카트회원국이 되면서 輸入制限制(Negative List System)로 전환됨.

○1978年 政府는 農政開放 政策을 계획하고 1978년에 3회에 걸쳐 231個 品目を 輸入自由化함으로서 輸入自由化率이 68.7%에 달하였다.

○1980年 輸出入 期別公告를 年度 單位로 시행하는 한편 輸出入 관련특별법을 統合

公告로 변경시행함.

○1984年 輸入自由化 豫示制度를 도입하고 “88”년까지 輸入自由化 計劃 발표

“84”年 29個品目, “85”年 37個品目, “86”年에 21個品目, 87年 8個品目, 88年 43個品目 수입개방함.

○1989年 “農林畜水産物 輸入自由化 3個年 豫示計劃”을 導入함으로서 食品輸入開放 시대에 막을 열었다.

한편 現在 輸出入公告에 依하여 輸入制限이 되고 있는 品目は 〈표 5〉에 나타난 바와같이 총 269개 品目이며 각종 特別法에 依하여 輸入이 制限된 品目は 139個 品目に 달한다.

表 2. 食品수입 자유화 추진현황(1984~1988)

연도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1984 (29)	총계(2), 레몬과 라임, 무화과, 생모피(4), 커피(2), 맥주, 설탕, 과자(4), 초코렛(2), 커피조제품, 착색가당향미 탄산수(19)	곰양어, 열대어, 기타관상용 활어, 송어, 삼치, 새우(산것), 굴(비양식용), 소라와 고동(비양식용), 들가재(냉동), 바다가재(건조)(10)	
1985 (37)	종우(2), 종돈, 귀갑과 귀판, 천산갑, 동물정액, 그레이프 후르츠, 면실유, 마아가린, 이미테션라이드, 쇼팅(2), 사탕무우당 및 사탕수수당(3), 가당코코아, 코코아조제품, 혼합조미료(4), 음료베이스(2), 옥수수 통조림, 가당향탄산수, 변성알콜, 양조식초(2)(28)	북어, 가다랭이, 산계(비양식용), 굴(신선, 냉장), 산호(2), 골뱅이(훈제), 우렁이(훈제)	아몬드
1986 (21)	칠면조고기, 기타가금류고기, 가금류의 식용설육, 커피 대용물, 루플린, 차 또는 마태의 조제품, 토마토소스, 인스턴트 커피, 기타소스, 별계음료(10)	도미, 마다랭이, 대구(건조), 기타정어리, 소라(냉동), 굴(건조), 소라(신선, 냉장), 오징어통조림, 소라통조림, 전북통조림, 계통조림(11)	
1987 (8)	동물의 방광, 감(단감제외), 소시지 유사 조제품, 돼지고기통조림, 가금고기통조림, 그레프후르츠 주스, 레몬주스, 크렌베리주스(8)		
1988' (43)	파충류, 환형동물, 개구리 다리, 상아(3), 기타 동물성 생산품, 애보카도우, 마르멜로, 양귀비씨, 화초용종자, 기타 식물성 생산품, 들기름과 분획물, 육엑스, 과일조제품(5), 채소주스, 클로렐라(2), 스피루나(2), 향미용조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식이보조용 조제품(27)	기타 포유류(해양동물), 실지렁이, 기타 연어류, 해덕, 검정대구, 어류의 간장(2), 기타 어류의 사체, 기타 해초류, 멸치통조림, 전갱이통조림, 기타 통조림, 바다가재통조림(13)	수피(2) 기타 포장용 식물의 잎(3)

註 : 1. 1988년 이전은 CCCN상품분류(8단위) 1983년은 HS 10단위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表 3. 1989~'91년중 수입자유화 예시품목(243개)

연도 품목	'89(82)	'90(76)	'91(85)
과 실 (20)	대추야자, 망고, 나무딸기, 파파야 등 11개	페칸 기타 신선과일(키위 후르츠)등 2개	파인애플, 바나나, 멜론, 호두 등 7개
축 산 물 (24)	산양고기(냉장)말, 당나귀, 노새, 버새의고기(신선), 오리고기 무절단(신선, 냉장)등 7개	산양고기(냉동), 산탍(185kg이상), 당나귀, 노새, 버새의 고기(냉동), 오리고기 절단육(신선, 냉장)등 8개	사슴고기, 어린면양의 고기(신선), 곤충류(꿀벌), 오리고기 무절단(냉동)등 9개
가공식품 (106)	과실혼합쥬스, 육즙, 딸기통조림, 낙화생유(정제유), 멸치(통조림 이외의 조제품), 대구(염수장), 대구 피레트, 어란(훈제), 콩치(염장, 염수장), 다시마(염장), 피너츠버터, 커피 프리머, 배통조림 등 40개	딸기쥬스, 소시지, 라임쥬스, 파인애플쥬스, 해바라기씨유(정제유), 게살(훈제), 게(통조림외 조제품), 정어리(통조림외 조제품), 새우와 보리새우(훈제), 혼합(염장) 등 35개	칠면조 조제품, 유채유(조유, 정제유), 대두유(조유), 대두유(정제유), 대두유(기타), 해바라기씨유(조유), 복숭아(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것), 게살(통조림 이외의 조제품), 고등어(통조림 이외의 조제품), 생선소시지 기타 해초류(조제품), 어류의 피레트(신선, 냉장), 성게(염장, 염수장), 상어지느러미(건조, 염장), 문어(염장, 염수장), 개량조개(염장, 염수장)등 31개
수 산 물 (53)	연어(신선, 냉장), 대구(냉장), 민대구(냉동), 닭새우(산것, 신선, 냉장, 건조, 염장, 염수장) 등 12개	바다가재(냉동), 혼합(냉동), 송어(신선, 냉장), 날개다랭어(냉동), 황다랭어(냉동), 굴(냉동), 재첩(산것, 신선, 냉장), 성게(건조), 해삼(건조), 우렁생이(건조)등 18개	어란(신선, 냉장, 건조), 가리비과조개(신선, 냉장, 냉동), 다시마(신선, 건조), 게(신선, 냉장), 게삼(냉동),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건조), 해삼(냉동), 잉어(활어), 기타어류(활어), 갯장어(신선, 냉장), 농어(냉동), 백합(신선, 냉장), 진주조개(신선, 냉장), 피조개(냉동), 피조개(신선, 냉장), 새조개(산것), 바지락(건조)등 23개
곡 물 (19)	잡두, 이집트콩, 렌즈콩 등 3개	호밀가루, 밀(메슬린), 호밀, 귀리, 옥수수가루 등 7개	곡물의 배아, 조, 수수, 강낭콩, 완두콩, 기타콩, 기타 대두분 등 9개
사 료 (10)	들깨박, 기타 식물성박, 수지박, 배합사료(양돈용)등 5개	알팔파, 배합사료(어류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을 주로한것)등 4개	대두박 등 1개
기 타 (11)	복숭아, 자두, 살구의 핵, 잇꽃씨 등 4개	저피, 해바라기씨 등 2개	떡갈잎, 멩게잎, 옥사, 전연사(소매용), 유채 등 5개

* ()내는 품목수임

表 4. 미국의 수입자유화 요청품목(119)

구분	품목	
'89 (22)	소의간장(냉동), 돼지의 간장(냉동), 기타식용설육(소·돼지의 것 제외), 가금류의 절단치 않은육(오리의 것·신선·냉장), 파파야, 초본류딸기(신선), 크렌베리·빌베리, 균질화한 조제품, 감귤류의 잼·제리 및 마아말레이드, 기타과실의 퓨레·페이스트, 배(기타방법으로 조제한것), 피너츠버터, 커피크리머, 식물성단백질계 물질(단백질 함량 48% 이상), 이집트콩, 렌즈콩, 잠두, 수수박, 배합사료(양돈용), 기타 배합사료(대용유 제외), 피스타치오, 기타 과실의 잼·제리	
예시 품목	'90 (19)	기타육과 식용설육(냉동), 오리의 절단육(신선·냉장), 오리의 절단육(냉동), 소시지, 유아용 조제식품(기타의 것), 기타 신선과일(키위후르츠),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파인애플통조림, 토마토주스, 듀럼종의 밀, 메슬린, 기타밀, 호밀, 귀리, 알팔파, 배합사료(어류용), 사료첨가제(2:비타민을 주로한것, 미량광물질을 주로한것), 기타 견과류중 pekan·마카다미아
	'91 (21)	돼지의 식용설육(신선·냉장), 돼지의 식용설육(간장제외, 냉동), 오리고기(냉동, 절단하지 않은것), 동물의 장, 멜론(수박포함), 대두유(3:조유, 정제유, 기타), 해바라기씨유(조유), 옥수수유(2:조유, 기타), 복숭아통조림, 완두, 강낭콩, 기타콩, 기타건조채두류, 대두유박, 헤즐너트·필버트(2:탈각한것, 탈각안한것), 호도(2:탈각한것, 탈각안한것)
유보품목 (57)	양파(건조), 마늘(2:건조·냉동), 오렌지, 신선포도, 사과, 배, 복숭아, 기타 냉동과실류 냉동견과류(감귤, 포도), 감귤류 퓨레·페이스트, 오렌지주스(4:농축냉동, 미농축냉동, 농축미냉동, 기타), 포도주스, 사과주스, 두부, 호프, 신선·냉장쇠고기(3:도체 및 이분도체, 기타의 것 뼈채절단, 뼈없는 것), 냉동쇠고기(3:도체 및 이분도체, 기타의 것 뼈채절단, 뼈없는 것)소의 식용설육(신선·냉장), 소의 혀(냉동), 기타소의 식용설육(냉동), 닭고기(신선·냉장·냉동), 닭의 절단육(신선·냉장, 냉동), 기타난황, 기타조란, 쇠고기 조제품, 조제분유, 가공치이즈, 동물의 위, 소정액, 돼지정액, 수정란, 녹두, 팥, 감자의 분과 조분·감자플레이크, 옥수수(3:종자용, 사료용, 기타), 옥수수 전분, 대두, 낙화생(2:탈각한 것, 탈각안한것), 기타 낙화생조제품, 육·설육의 분과 조분(사료용), 사료첨가제(2:항생물질로 주로한것, 기타), 일담배(4:주맥, 제거안한것의 황색종 또는 비어리종, 주맥, 일부·전부 제거한 것의 황색종 또는 비어리종)	

※—은 통합공고(예시 20, 유보 21)

자료: 농림수산부

나. “88”年과 “89”年 食品輸出入 實績比較
 “88”年 對比 “89”年 食品輸出實績 “88”年에 약 27億弗을 수출하였으나 “89”年에 는 약 25億5千萬弗로 약 5% 정도가 감소 하였으며, 이중 輸出伸張率이 가장 높은 것 은 製粉工業生産品인 밀가루로 “88”年에 比하여 686%가 增加된 1,659千弗이며 그 다음은 水産加工食品中 캐비아로 “88”對 比 305%가 伸張 되었다. 반면 輸出伸張率

이 가장 떨어진 것은 홍합통조림은 62.24% 가 줄었으며 그다음은 乳製品과 꿀 등으로 51.4%가 “88”年 對比 줄었다.

한편 “88”對比 “89”年度 輸入食品伸張 은 28.67%가 늘어난 약 33億弗에 도달했 다. 이중 輸入伸張率이 가장 높은 것은 약 2,000%가 늘어난 맥아와 약 1,400%가 늘 어난 인스탄트커피로 나타났다.

表 5. 무역통계월보

1. 수 출('89)

(단위 : 천\$)

대 분 류	품 목	H.S번호	1988년	1989년	증가율% 88/89	
1. 육 및 식 용설육	· 돼지고기	0200	64,317	81,176	126.21	
		0203	39,385	56,300	142.94	
2. 어 류	· 면양, 산양고기	0204	23,018	23,731	103.09	
		0300(0301 제외)	1,366,497	1,193,594	87.34	
		· 어류(신선, 냉장, 냉동)	0302~0303	609,953	550,051	90.17
		· 어류 필레이트등	0304	189,184	188,668	99.73
		· 가공어류	0305	34,011	30,933	(90.94)
		-염장명태 어란	· 20.4010	2,861	3,001	104.89
		-염장청어 어란	· 20.4030	14,259	13,026	91.35
		-훈제어류	· 40	1,978	1,500	75.83
		-건조어류	· 50	11,230	7,025	62.55
		-염장어류	· 60	2,721	9,591	131.97
		· 감각류	0306	90,003	68,320	(75. 9)
		-냉동품	· 10	48,479	33,185	68.45
		-신선품	· 20	41,511	35,124	84.61
		· 연체동물	0307	447,346	355,612	(79.49)
		-갑오징어	· 49.3000	3,934	4,168	105.94
3. 낙농품등	· 유제품, 꿀 등	0400	1,359	674	49.59	
4. 가공채소 류	· 냉동채소 · 건조채소류 -표고버섯	0710	1,740	1,545	88.79	
0712		20,706	28,106	(135.73)		
· 30.1030		16,406	23,700	144.45		
5. 식용과일 및견과류	· 밤(신선) · 사과(신선) · 배(신선) · 딸기(냉동)	0802.40	81,376	74,768	91.87	
0808.10.0000		16,856	20,891	123.93		
.20.1000		8,200	8,062	98.31		
0811.20.0000		2	13	650.		
6. 커피, 녹 차, 홍차류	· 녹차, 홍차류 · 고추(건조, 분쇄)	0902	1,064	1,586	149.06	
0904.20		2,270	7,030	309.69		
7. 재분공업 생산품	· 밀가루	1101.00.1000	211	1,659	786.25	
8. 향료식품 등	· 백삼류 · 홍삼류 · 인삼분말 및 캡슐류 · 인삼엑기스류	1211.20.11~12	22,052	23,868	108.23	
.13		55,414	62,649	113.05		
.21		3,669	4,923	134.17		
1302.19.10		18,952	28,200	148.79		

대분류	품목	H.S번호	1988년	1989년	증가율% 88/89
9. 수산물, 가공식품	· 인삼차류	2106.90.30	14,342	12,462	86.89
	· 인삼음료	2202.90.1000	4,459	4,013	89.99
	· 김	1212.20.10	8,055	6,699	83.16
	· 미역	.20	51,081	69,729	136.50
	· 톳, 파래	.30~40	35,430	35,982	101.55
	· 다시마	.50	1,737	1,479	85.14
	· 수산물 통조림	1604	175,292	166,057	87.14 (94.73)
	- 연어	.11.1000	6,415	4,672	72.82
	- 정어리	.13.1000	11,438	9,409	82.26
	- 고등어	.15.1000	4,052	2,419	59.69
	· 수산가공식품				
	- 쥐치포	.19.90	64,165	39,100	60.93
	- 생선페이스트	.20.1000	7,471	8,209	109.87
	- 생선묵등	.20.30~90	75,242	82,020	109.
	- 캐비아	.30	4,275	17,322	405.11
	· 갑각류 가공품				
	- 게살통조림	1605.10.1010	854	3,446	403.51
	- 기타 게 가공품	.1020,1090, 9000	44,118	28,872	65.44
	· 연체동물통조림류	1605.90.10	65,206	61,128	93.74
	- 굴	.1010	46,183	51,128	110.70
	- 홍합	.1020	7,680	2,516	32.76
- 바지락	.1030	9,332	5,763	61.75	
· 연체동물 가공품류	1605.90.20~90	79,134	43,293	(54.70)	
- 조미오징어	.9010	73,108	38,139	52.16	
10. 당류와 설탕과자					137.14
· 설탕	1701.99.0000	72,793	105,066	144.33	
· 인조꿀	1702.90.1000	1,050	1,762	167.80	
· 슈빙검	1704.10.0000	11,186	12,690	113.44	
· 캔디류	.90.20	4,115	2,841	69.01	
· 기타 설탕과자	.90.9000	1,803	2,367	131.28	
11. 초코렛 류	1806	14,205	10,330	72.72	
· 조제코코아 분말	.10.0000	11,124	7,727	69.46	
· 기타 초코렛류	.20~90	3,079	2,599	84.41	
12. 곡류 가공식품					116.79
· 곡물조제 가공식품	1901	19,000	25,742	(135.48)	
- 과자용 혼합가구	.20.0000	10,381	17,961	173.01	
· 국수류	1902	35,730	38,907	(108.89)	
- 국수	.19.1000	3,079	3,929	127.60	
- 당면 등	.19.20~90	3,074	3,634	118.21	

대분류	품목	H.S번호	1988년	1989년	증가율% 88/89	
13. 채소가 공식품	-인스턴트면류	.30.10	28,223	30,144	106.80	
	·콘플레이크류	1904.10.90	8,711	9,953	(114.25)	
	·빵류	1905	13,403	15,142	(112.97)	
	-파이와 케익	.90.1030	2,174	2,281	104.92	
	-비스킷류	.1040	6,079	5,184	85.27	
	-미과	.1050	1,407	2,276	161.76	
	-기타	.1090	2,627	4,392	167.18	
	20류		61,609	54,741	88.85	
	·가공버섯류	2003	8,720	8,964	(102.79)	
	-양송이 통조림	.10.1000	175	-	-	
	·가공채소류	2005	16,338	17,049	(104.35)	
	-김치	.90.1000	13,231	14,062	106.28	
	-기타	.9000	2,878	2,844	98.81	
	·잼류	2007	971	546	(56.23)	
	·가공과일, 너트류	2008	32,734	26,533	(81.05)	
	-땅콩류	.11	3,154	3,308	104.88	
	-밤통조림류	.19.1000	10,476	6,584	62.84	
	-감귤류	.30.0000	13,876	8,370	60.31	
	-복숭아통조림류	.70.0000	2,798	4,604	164.54	
	-포도통조림류	.99.1000	1,091	1,251	114.66	
·과일쥬스류	2009	1,520	443	(29.14)		
14. 각종조 제 식료 품	·커피 등	2101	6,866	5,606	(81.64)	
	·소스류	2103	7,799	7,832	(100.42)	
	-간장	.10.0000	1,141	958	83.96	
	-된장	.90.1010	953	1,195	125.39	
	-고추장	.1030	2,355	2,062	87.55	
	-혼합조미료	.9030	1,508	1,429	94.76	
	·스프류	2104	2,472	2,440	(98.70)	
	·기타 가공식품류	2106	28,128	31,926	(113.50)	
	15. 음료류	22류		41,296	46,027	111.45
		·청량음료류	2202	31,405	33,347	(106.18)
-과즙음료		.90.2000	11,849	14,941	126.09	
·맥원		2203	4,506	5,518	(122.45)	
·기타 주류		2204~2208	4,954	6,782	(136.89)	
·소주		2208.90.4000	2,986	3,682	(123.3)	
·인삼주		.5000	553	650	(117.54)	
16. 조미료 및 이미노 산 등	·글루타민산 나트륨	2922.42.2000	52,989	37,648	(71.04)	
	·사카린	2925.11.1000	12,090	13,178	108.99	
	·핵산류	2933.59.3010	4,856	6,444	130.02	
	TOTAL		2,695,647	2,549,197	94.57	

자료 : 관세청 ※사료 곡물 제외

2. 수 입('89)

(단위: 천\$)

대분류	품목	H.S번호	1988년	1989년	증가율% 88/89
1. 육 및 식용설육	· 쇠고기(신선, 냉장, 냉동)	0200	62,518	238,484	381.46
		0201,0202	42,828	217,599	508.07
2. 어 류	· 면양, 산양고기	0204	19,140	17,870	93.36
		0300(0301제외)	290,144	286,739	98.82
	· 어류(신선, 냉장, 냉동)	0302,0303	205,460	177,541	86.41
		0304	38,678	58,435	151.08
	· 가공어류	0305	1,210	1,546	127.76
	· 갑각류(새우등)	0306	22,486	14,885	(66.19)
		- 냉동품	.10	18,624	8,291
	- 신선품 및 기타	.20	3,859	6,589	170.74
	· 연체동물(오징어등)	0307	22,310	34,332	(153.88)
		- 냉동오징어	.49.1020	16,514	14,220
	- 염장해파리	.99.3090	-	-	-
	3. 낙농품등	· 가공우유	4류	15,181	18,489
0402			1,607	1,644	(102.30)
- 탈지분유류		.10	1,074	1,223	113.87
· 유 장		0404.10.1000	11,994	13,164	109.74
4. 가공채소 류	· 건조채소류	0712	3,771	8,847	234.60
		0713.32.0000	4,080	295	7.23
		0714.10.20	22,535	42,431	188.28
5. 식용과일 및견과류	· 견과류	0802	6,828	10,996	(161.04)
		- 아몬드	.10	6,371	9,561
	· 바나나(신선, 건조품)	0803	8,279	15,487	(187.06)
		0805	9,595	15,580	(162.37)
	- 기타 감귤류	.20.9000	3,176	2,753	86.68
	- 레몬	.30.0000	2,131	2,552	119.75
	- 그레이프푸르트	.40.0000	3,512	9,695	276.05
	· 건포도	0806.20.0000	6,530	6,481	(99.24)
6. 커피, 녹 차, 홍차류	· 커피원두	0901	67,488	72,407	107.28
		0904	8,466	6,462	(76.32)
	- 후추	.10	7,885	6,450	81.80
	- 고추	.20	577	12	2.07
	· 계피	0906.20~.20	3,062	3,376	(110.25)
	· 생강, 사프란 등	0910	971	1,093	(112.56)
7. 곡물	· 밀과 메스린	1001	542,455	436,010	122.06 80.37

대분류	품목	H.S번호	1988년	1989년	증가율% 88/89
8. 재분공업	· 호밀	1002	5,949	854	14.35
	· 귀리	1004	1,511	1,029	68.10
	· 옥수수	1005	579,615	853,837	147.31
	· 수수	1007	6,214	75,450	1214.19
	· 기타 곡물	1008	10,566	31,962	302.49
9. 향료식품 등	· 맥아	1107	505	11,297	2237.02
	· 전분	1108.10	2,422	3,421	141.24
10. 락 및 검류	· 대두	1201	292,640	329,840	112.71
	· 낙화생	1202	2,569	2,763	107.55
	· 코프라	1203	15,122	19,711	130.34
	· 아아민	1204	2,002	3,269	163.28
	· 피마자	1207.30	1,259	657	52.18
	· 참깨	.40	3,733	39	1.04
	· 향료용 식물	1211	21,520	28,098	(130.56)
	- 감초	.10.0000	4,059	4,075	100.39
	· 사인	.90.9010	2,257	2,448	108.46
	- 용안육	.9040	1,982	2,759	139.20
- 산사자	.9050	944	636	67.37	
11. 동식물 성유지	· 락 및 천연검	13류	16,547	18,423	111.33
	· 식물성액즙과 엑스등	1301	1,776	1,991	112.10
		1302	14,771	16,432	111.24
12. 동식물 성식품	· 우지	1502.00.1000	53,013	46,081	86.92
	· 어류유지	1504	4,562	7,036	154.23
	· 팜유	1511	69,835	64,375	92.18
	· 면실유	1512.20	9,092	15,058	165.61
	· 야자유	1513.10	8,768	35,876	409.16
	· 비휘발성 식물성유지	1515	3,633	5,547	152.68
	· 동식물성유지와 분획물	1516	9,884	10,937	110.65
13. 당류와 설탕과자	· 옥통조립	1602중 밀폐 용기에 넣는것	3,293	7,249	(220.13)
	- 돼지고기 통조립	(1602.41.1000 .42.1000 .19.1000)	3,085	7,107	230.37
	· 원당	1701	262,950	343,496	132.30
	· 기타 당류	1702	6,499	5,571	(85.72)
	- 유당	.10.1000	3,767	4,178	110.91

대분류	품목	H.S번호	1988년	1989년	증가율% 88/89
14. 초코렛류	· 당 밀	1703	19,722	21,263	107.81
	· 설탕과자	1704	2,773	11,739	423.33
	· 코코아 및 코코아버터	1801~1805	17,633	17,628	99.97
	· 초코렛 등	1806	7,727	19,991	258.71
15. 곡류 가공식품	· 곡물조제 가공식품	1901	2,692	6,316	307.69
	· 국수류	1902	1,348	2,588	234.62
	· 빵 류	1905	1,423	7,905	191.98
	· -과실	1905	1,423	7,905	555.51
16. 채소가공식품	· 토마토 페이스트	20류	41,478	84,290	203.22
	· 가공채소류	2002.90.1000	7,289	10,940	150.08
	· 가공과일류	2005	3,357	5,213	155.28
	· -과실 칩	2008	5,425	12,266	(226.10)
	· 과일 칩	.92.1000	2,520	5,487	217.73
	· 과일 주스류	2009	22,860	49,807	(217.87)
	· -오렌지주스(농축)	.11.1000	20,109	46,309	230.28
	· -그레인프루트	.20.0000	1,269	761	59.96
17. 각종 조제식품	· 인스탄트커피				171.29
	· 호 모	2101.10.1000	327	4,714	1441.59
	· 소스류	2102	1,205	2,239	185.80
	· -고추장	2103	5,890	7,542	(128.04)
	· -혼합조미료	.90.1030	1,345	330	24.53
	· 스프류	.9030	1,548	2,914	188.24
	· 기타 가공식품류	2104	3,014	3,640	120.76
18. 음료류	· 기타 가공식품류	2106	11,935	20,184	169.11
	· 맥 주				92.70
	· 포도주	2203	891	1,227	137.71
	· 포도주	2204	3,809	3,130	82.17
TOTAL			2,567,473	3,303,627	128.67

자료 : 관세청 ※사료곡물계의외

다. 輸入自由化에 따른 品目別 效果 및 對應 措置

韓國産業開發研究院에서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 輸入自由化된 2,254個 品目에 대한 輸入自由化가 國內産業에 미친 效果를 綜合分析 하여 왔다. 여기에는 1988年 10月에 발표된 내용중 食品으로 분류된 13個 品目에 대한 조사내용을 발췌하였다. <표 6>에서 보면 13個 品目中 대부분 品目이 價格과 品質面에서 國內生産品이 低位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主目할 것은 된장, 고추장, 새우젓까지도 競争力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중 추잉껌, 초코렛은 價格, 品質面에서 競争力이 優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스탄트 커피 역시 競争力이 優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88~'89"년에는 輸入이 계속 增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食品人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表 6. 輸入自由化에 따른 品目別 效果 및 對應 措置

區分 品目	國內 및 輸入動向	競爭力	輸入自由化에 따른 效果分析		問題點 및 改善提案
			影響度 및 對應措置	關稅分野波及效果	
1. 코코아분 (1978)	○ 需要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 ○ 需要增加에 의해 1980 年代 以後 增加趨勢를 持續하였으나, 最近 多 少 減少하고 있음. ○ 國內需要 漸進의 增加 趨勢 ○ 大企業 參與等 內需市 場過當競爭 ○ 容器 및 高級면 開發로 賣出增大 注力	○ 製品の 特殊性을 同 因해 競爭力의 困難 ○ 類似製品과의 競爭 力에서 優位를 占 함	○ 調製品 開發 및 賣出增 大 ○ 消費者의 多樣化된 需 要充足	○ 거의 影響을 미치지 않 음 ○ 消費者의 多樣化된 需 要充足	
2. 라면 (1978)	○ 國內 參與業體가 영세 하고 少量 多品種 業界인 關係로 製品開發이 未洽하고, 事業性 體制 및 大企業參與 困難 ○ 輸入依存度가 높음	○ 競爭力이 價格品質 面에서 低位하고, 製品의 多樣화가 未洽함.	○ 거의 影響을 미치지 않 음 ○ 輸入自由化와 關係없이 國內需要開發에 注力	○ 小量, 多品種目인 關係로 外國人業體의 追 加的 參與가 低位하여, 既存 業界에 對한 影響 은 미미함.	○ 國內業體間 過當競爭으 로 經營에 어려움을 겪 고 있어 이에 對한 解 消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임.
3. 食品 및 飲料用 香料 (1978)	○ 1980 年代 以後 生産, 輸入增大 ○ 國內 在庫增大, 農漁民 所得격감으로 輸入 金 枝조치 實施	○ 價格面에서 競爭力 이 大端히 低位함.	○ 消費者의 기호開發, 多 樣한 欲求充足, 料食業 界 活性化 寄與	○ 國民衛生과 關聯하여 品質檢査機能強化, 流通過程에서의 事後管理 기능 強化	
4. 새우젓 (1981)	○ 1980 年代 以後 生産, 輸入增大 ○ 國內 在庫增大, 農漁民 所得격감으로 輸入 金 枝조치 實施	○ 價格面에서 競爭力 이 大端히 低位함.	○ 消費者는 低價의 高品 位 製品購入, 農漁民 所得 격감등 二重性강 화	○ 一方의 인 금지 조치로 代替用途로 轉換 案에 의해 低價品 活用方 案 講究	

區分 品目	國內 및 輸入動向	競爭力	輸入自由化에 따른 效果分析		問題點 및 改善提案
			影響度 및 對應措置	關稅分野波及效果	
5. 건포도 (1981) 아몬드, (1985) 레몬과 라임, 그레이프 후루츠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內 生産栽培不可 ○ 1980年代 以後 輸入量이 增加勢 持續 ○ 輸入價가 持續的 下落勢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競爭力比較 困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製造業界, 流通業界가 加工製品開發로 賣出, 利益增大를 가져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加工品 需要開發에 따른 編昇 作用으로 國內 生産 및 加工品 製造用 調達量 增大 ○ 國內 生産果實類와 代替財 機能보다는 補充財 機能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物量이 低下하여 아직 問題는 없으나 持續的 輸入增加勢를 나타내고 있어 物量制限에 의한 規制方案 檢討 要
6. 슈링걸 (1983) 드루프스 (1984) 케리멜, (1984) 초코렛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需要는 漸進的 增加勢를 維持하고 있으나, 輸入은 減少趨勢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費者 選好度에 따라 價格, 品質 競爭力 優位 占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輸入自由化에 對備한 業界의 持續的 技術 및 製品開發 努力에 의해 輸入自由化 以後 內需 및 輸出 伸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 흥동구매, 外製 選好心理, 流通業體過剩販促 등으로 因해 輸入品 需要가 增大될 우려가 있어, 政府의 次元에서의 弘報와 業界의 持續的인 努力이 경주되어야 함.
7. 된장, 고추장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生活樣式의 變化로 因해 加工, 調製品 需要 增加 ○ 國內業界가 영세하고 製品開發이 低位 ○ 輸入物量 增加勢 持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價格競爭力이 低位하고 製品開發, 品質 等 備價格競爭 力面에서도 열세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內 調達 原料價의 高價로 製品開發, 原價節 減努力에도 不拘하고, 經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到散하고 있는 實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通業界는 輸入品取扱으로 賣出 및 利益을 增大시키고 있으나, 原料제배者인 農民의 所得減少招來 ○ 消費者는 多樣한 製品을 低廉하게 購入하여 肯定的 影響度 表示 	

區分 品目	國內 및 輸入動向	競爭力	輸入自由化에 따른 效果分析		問題點 및 改善提案
			影響度 및 對應措置	關稅分野波及效果	
8. 커피 (1984)	<p>○自販機의普及等日用食品化되어國內需要는持續的으로增大</p> <p>○커피(원두)의輸入은增大하고 있으나加工品輸入은減少하고 있음.</p> <p>○輸入價는每年引上되고 있는反面輸出의量的,價格面에서減少하고 있음.</p>	<p>○價格 및 品質競爭力에서對等한水準임</p>	<p>○輸入完製品과의競爭力은優位를占하고 있으나, 스위스(레슬러)의韓國進出로 過熱競爭豫想</p> <p>○Marketing活動強化, 研究開發費 增額으로 製品開發 및 市場占有率擴大 모색</p>		<p>○國産茶業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p>
9. 맥주 (1984)	<p>○國內業界의 製品多樣化로 需要 및 生産 增大</p> <p>○輸入量이 미증을 보이고 있음.</p>	<p>○現在는 價格 및 品質競爭力面에서 優位를 占하고 있음.</p>	<p>○外國의 有明 Maker와 技術提携에 의해 製品開發 및 多樣化를 가져와, 輸入自由化에 따른 影響은 低位함.</p>	<p>○國産 맥주맥을 100% 使用하고 있어 農家所得에는 影響이 없으나, 價格競爭力 提高를 爲한 購入價 下落으로 農家被害豫想</p>	<p>○輸入關稅의 追加的인 引可時 價格競爭力面에서 어려움이豫想되, 이에 對한 方案이 講究되어야 하겠음.</p>
10. 우지 (1985)	<p>○國內 生産量이 急速히 增大하고 있으나, 絶對 需要에 對한 供給이 不足하여, 輸入依存도가 높음</p> <p>○植物性油인 淸油 등으로 代替되고 있어 輸入은 減少 趨勢임.</p>	<p>○國內需要에 比해 供給量의 絶對不足으로 競爭關係에 있지 않음.</p>	<p>○加工生産業界에서 價格(輸入價)이 引上되고 있어 淸汕油로 代替하여 價格競爭力에 對處</p>		

區分 品目	國內 및 輸入動向	競爭力	輸入自由化에 따른 效果分析		問題點 및 改善提案
			影響度 및 對應措置	關稅分野波及效果	
11. 광유 (1985)	○우지와의 대체적關係에 있으며,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需要가急增하고 있음.(라면튀김용이 가장 많이 輸入되고 있음) ○1980年代以後 輸入量이急速히增加하였으나, 輸入價는急速히下落하고 있음.	○國內需要에 比해 供給量이 絶代不足으로 競争關係에 있지 않음.		○加工, 生産業體에서 原料·副資材 調達이 容易하여지고, 國內 代替品이 없기 때문에 關聯分野에 미치는 影響은 없음.	
12. 돼지고기 통조림 (1987)	○生活改善에 따라 需要는高級化, 多樣化되고 있으나, 商品開發이未洽하여 需要 正체현 尙임 ○需要增加로 輸入이 增加稅에 있음.	○價格 및 品質競争力面에서 大端히 低位		○輸入, 流通業體는 賣出 및 利益增大에 寄與 ○양돈業界는 大端히 타격을 받고 있음	○國內 양돈업체를 爲하여 制度的 支援方案이 講究되어야 할것임.
13. 그레이프 푸르츠쥬스, 레몬쥬스 (1987)		○價格 및 品質面에서 競爭力이 低位함.	○國內需要가 增加하고 있는 反面 輸入量이 低位하여, 影響은 아직 미미함.	○果實 쥬스류 需要가 全般的으로 增加하고 있어, 代替商品製品業界는 물론, 果實계매농가 또는 波及效果는 大端히 미미함.	

※ 韓國産業開發研究院, 1988. 10

輸入自由化가 國內生産에 미친 效果分析

()은 수입개방 연도

V. UR協商과 食品産業의 展望

UR農産物 協商이 展望대로 타결된다면 食品産業은 非交易的 機能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加工食品의 原料는 물론 完製品 및 半製品의 수입이 全面 開放됨으로서 先進國 技術의 從屬化 및 原料輸出國의 武器化앞에 서게 되어 食品産業基盤이 붕괴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食品의 完製品 및 半製品은 계절적으로 生産의 制限性을 거의 갖지 않으며, 운반 및 저장에도 거의 制限性을 갖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立場은 이들의 輸入에 대응할 수 있는 競爭力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食品産業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 食品輸入 開放의 肯定的 部分

-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國內産 보다 價格이 싼 原料를 供給받을 수 있으므로 良質의 製品을 싼값으로 消費者에게 供給할 수 있다.
- 大企業은 食品貿易加工業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先進技術 습득이 가능하다.
- 食品輸出의 可能性이 높아지며 多邊化될 수 있다.

2. 食品輸入開放의 否定的 部分

- 技術의 落後 및 原料供給價에서 競爭이 될 수 없다.
- 原料輸入開放에 앞서 完製品 開放이 先行될 수 있으므로 品質 및 價格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 여러 제품이 輸入됨으로 製品의 life cycle이 짧아져 製品의 開發 및 설비 投資費가 높아진다.
- O.E.M 방식의 輸入擴大로 판매경쟁이 치

열해짐에 따라 販賣費가 높아진다.

- 綜合貿易商事가 食品輸入을 積極화 할것이다.
- 多國籍 食品會社들이 직접 投資할 것이 예측된다.
- Royalty인상이 예측된다.
- 原料의 國際價格이 계속 인상될 것이다.
- 各種 協同組合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製品 生産에 직접 참여 함으로 市場 쟁탈전이 치열해 질 것이다.
- 原料 및 完製品 輸入을 위한 資金 부담이 일시에 커질 것이며 國家의 資金 지원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食品産業體의 共同 對應策

- 새로운 食品開發을 위한 產學協同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相互 보완적인 입장에 있는 零細食品業體를 育成하고 專門化시킴으로 資本과 市場의 위험성을 분산시켜야 한다.
- 食品産業體가 必要로 하는 國內外 情報를 수집 제공하는 정보업체를 共同育成하여야 한다.
- 消費者를 위한 食品知識에 대하여 共同 홍보활동을 필요로 한다.
- 年間 약 100億弗로 예상되는 食品의 輸出入 업무를 위한 共同貿易활동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食品産業體를 보호·육성하고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食品産業體研究所 協議會는 물론 韓國食品工業協會와 韓國食品研究所 活動을 活性化하고 食品産業體當面課題에 積極적으로 개입을 必要로 한다.

4. 食品産業體別 對應策

- 專門性을 극대화 시키고 小品目, 多量生産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 對外的으로 製品의 輸出 및 原料와 完製

품의 輸入을 위한 經營組織의 變化가 있어야 한다.

- 과감한 技術 도입과 自動化를 위한 施設 개선을 하여 稼動率을 높혀 生産性을 向上시켜야 한다.
- 研究開發을 위한 投資와 高級人力養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食品生物工學에 관한 집중 研究가 필요하다.
- 西區의 東洋食 선호에 맞고 國際化할 수 있는 輸出食品開發이 必要하다.
- 傳統食品과 機能食品에 대한 開發이 시급하다.
- 우리에게 맞는 香辛料 및 調味料의 開發이 필요하다.
- 食品産業 역시 國內外的으로 빠른 情報를 필요로 한다.
- 새로운 食品流通과 廣告를 필요로 하고 있다.

VI. 食品輸入 開放에 따른 對 政府 건의(案)

UR協商이 타결되고 食品輸入이 全面 開放될때 食品産業體는 自救策을 여러 측면에서 강구할것이나 홀로 서기에는 너무 벽찬감이 많다. 이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지금까지 食品産業을 內需産業이며 消費財産業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年間 약 100億弗 이상의 交易이 이루어짐으로서 현재 輸入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부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交易量이 될 食品産業의 育成을 國家經濟와 國民保健 次元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 대하여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食品産業團地를 조성하여 施設 및 技術開發을 위한 金融지원과 稅制지원을 함으로 食品産業이 輸出産業으로 構造變化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國民保健을 위한 有害食品 輸入을 막기 위해 檢疫制度의 개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消費者 보호를 위해 輸入食品의 과대廣告를 억제하고 한글 표시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며 우리 傳統食品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넷째, 食品産業보호를 위해 現行 關稅制度의 개선과 더불어 彈力關稅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다섯째, 産業被害보상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現行 貿易委員會의 기능과 권한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現行 食品衛生法을 보완해서 새로운 食品産業育成法을 제정하여 食品産業 保護育成을 도모하여야 한다.

VII. 結 言

우리나라 食品輸入은 對內的으로 所得水準向上으로 西區化된 輸入加工食品을 요구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國際收支保護를 이유로 한 가트의 18조 13항 졸업 및 韓美通商마찰과 더불어 UR農產物協商이 타결될 전망이므로 食品輸入은 대폭 增加될 展望이다.

우리의 食品産業은 홀로설수도 있고 송두리채 무너질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食品産業의 構造變化와 競爭力계고를 위한 食品人의 노력을 물론 政策당국의 배려와 온 國民의 지혜와 중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 食品産業이 위기를 맞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食品의 重要性을 재인식하고 國民과 더불어 政府와 食品人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食品産業이 國際化時代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한다.